

#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73 |
|----------|------|

2020년 6월 30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0년 5월 25일
- 다. 회부일 : 2020년 5월 29일
- 라. 상정일 :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0년 6월 1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이병한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법」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
(안 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 및 제31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'20. 2. 27.~3. 18.) 결과: 의견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변경 등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개정(시행 2020.1.1., 법률 제16855호, 2019.12.31., 일부개정)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세법」 개정 사항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※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「지방세법」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 지역자원시설세 목적(제 141조(목적)) 사항 중 ‘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’이라는 법문을 삭제한 것으로,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세외수입(사용료·원인자부담금 등)으로 충당되고 있어 이 부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사문화된 세목의 목적사항을 삭제하였으나,

본 조례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목적 조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,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등 법령 개정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에 개정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음.

### <관련 지방세법 신·구조문 대비표>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·해저자원·관광자원·수자원·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·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·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수리시설 및 <b>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</b> 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. |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. |

※ 1954년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등의 관련 비용 총당 목적으로 공동시설세가 도입(임의세, 조례 위임)되었으나 '오물처리시설등'에 대하여는 사용자·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당되고 있음.

○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체계 정비 관련 「지방세법」 개정 사항 (제142조(과세대상))을 살펴보면,

- ① 세목 구분 상 종전 '특정부동산분'(건축물, 선박, 토지)을 과세대상에서 토지를 삭제하고 명칭을 '소방분'으로 변경하여 종전과 같은 소방사무 소요 비용 총당 재원으로 정의하였으며,
- ② 종전 '특정자원분'을 과세대상에 따라 '특정자원분'과 '특정시설분'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, 설치 목적을 '지역개발사업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'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.

< 지방세법 개정 내용 >

| 개정 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개정 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세분류     | 과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분류             | 과세대상               | 목적  |
| 특정 부동산분 | 건축물, 선박<br>토지                       | ①소방재원<br>②자원보호·개발<br>③환경개선,<br>④지역균형개발 | 소방분             | 건축물, 선박<br>※ 토지 삭제 | 소방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정 자원분  | 발전용수, 지하수,<br>지하자원, 컨테이너,<br>원전, 화전 |  | 특정 자원분          | 발전용수, 지하수,<br>지하자원 | ①지역자원<br>보호·보전<br>②주민생활<br>환경 개선<br>③지역개발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정 시설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테이너,<br>원전, 화전 |                    |   |

※ ①특정부동산분의 명칭을 '소방분'으로 변경, ②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·시설분 구분, ③특정자원분·시설분의 목적을 '지역개발'과 '주민생활환경개선'으로 조정

<관련 지방세법 신·구조문 대비표>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<u>특정자원</u>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|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<u>특정자원분</u> 지역자원시설세-----<br>-----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 |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2. 지하수<br/> 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<br/> 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<br/>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</p> <p>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</p> <p>4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</p> <p>5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</p> <p>6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</p> <p>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</p> <p>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</p> |

○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구분 개정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‘소방분’(건축물, 선박)과 지역 자원의 사용·수익에 대하여 세원을 포착하는 특정자원분(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) 및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원을 포착하는 특정시설분(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)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출처: 「지방세법」 [법률 제16855호, 2019.12.31., 일부개정] 개정 이유 중

-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「지방세법」 중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구분 명칭과 조문 체계 변경 등 개정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의 법령 인용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- 안 제15조는 발전용수, 안 제17조는 지하수, 제19조제1항은 지하 자원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 조항으로 인용 법조항을 개정(법 제146조제 4항 → 법 제146조제5항)하려는 것이며,
- 안 제21조는 ‘특정시설분’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라 컨테이너에 대한 세율(법 제146조제4항 → 법 제146조제5항) 및 표준세율에 대한 인용 법 조항(같은 조 제1항제4호 → 같은 조 제2항제1호)을 반영하려는 것이고,
- 안 제23조는 원자력발전, 안 제24조는 화력발전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‘특정시설분’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라 인용 법조항 (법 제146조제1항제5호 → 법 제146조제2항제2호 / 법 제146조제1항제6호 → 법 제146조제2항제3호)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.
- 지역자원시설세 ‘특정부동산’이 ‘소방분’으로 개정됨에 따라, 본 조례 제 7절 제목(제7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→ 제7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)과, 안 제25조의 세율 인용 법조항(법 제146조제4항 → 법 제146조제5항) 및 명칭(특정부동산 → 소방분)과 표준세율 인용 법조항(같은 조 제2항→제3항)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.
- 안 제31조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 지역에 관한 규정으로 「지방 세법」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조문 및 명칭 등 법 개정 사항(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특정부동산 →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)을 반영하려는 것임.

**<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>**

| 현 행   | 개 정 안<br>(2021.1.1. 시행)  | 비고(지방세법)<br>(2021.1.1. 시행)   |
|---|--|--|
| <p><b>제15조(서울) 법 제146조제4항</b><br/>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  | <p><b>제15조(서울) 법 제146조제5항</b><br/>_____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</p>  |
| <p><b>제17조(서울) 법 제146조제4항</b><br/>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 | <p><b>제17조(서울) 법 제146조제5항</b><br/>_____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2. 지하수<br/>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<br/>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<br/>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</p>  |
| <p><b>제19조(서울) ① 법 제146조제4항</b>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 | <p><b>제19조(서울) ① 법 제146조제5항</b><br/>_____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<br/>4. 삭제 &lt;2019. 12. 31.&gt;<br/>5. 삭제 &lt;2019. 12. 31.&gt;<br/>6. 삭제 &lt;2019. 12. 31.&gt;</p>   |
| <p>②(생략)</p>  |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  | <p>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 |
| <p><b>제21조(서울) ① 법 제146조제4항</b>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 | <p><b>제21조(서울) 법 제146조제5항</b><br/>_____</p> <p>— <b>제2항제1호</b> —<br/>_____</p> | <p>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<br/>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<br/>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</p> <p>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  |
| <p><b>제23조(신고 및 납부) 법 제147조제1항제2호</b>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<b>법 제146조제1항제5호</b>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 | <p><b>제23조(신고 및 납부)</b> _____</p> <p>— <b>법 제146조제2항제2호</b> —<br/>_____</p>    | <p>1.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.</p> <p>2. 저유장, 주유소, 정유소, 유흥장,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.</p> <p>2의2. 대형마트, 복합상영관(제2호에 따른 극</p> |

| 현행  | 개정안<br>(2021.1.1. 시행)   | 비고(지방세법)<br>(2021.1.1. 시행)  |
|---|---|---|
| 제24조(신고 및 납부)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일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| 제24조(신고 및 납부) 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——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은 제외한다), 백화점, 호텔,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.<br>3. 삭제 <2019. 12. 31.><br>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<br>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<br>[시행일 : 2021. 1. 1.] |
| 제7절 <b>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</b>  | 제7절 <b>소방분</b> 지역자원시설세  |   |
| 제25조(세율)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<b>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</b> 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  | 제25조(세율) 법 제46조제5항 —— <b>소방분</b> ——<br>——<br>——<br>- 제3항 ——<br>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 지역)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, <b>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</b> 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.   | 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 지역)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<b>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</b>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. |   |
|   | <b>부 칙</b><br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, 제7조, 제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8장제7절의 제목,</u>  | <b>부 칙</b><br><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><br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 |

| 현행 | 개정안<br>(2021.1.1. 시행)                | 비고(지방세법)<br>(2021.1.1. 시행)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| 제25조,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| 부터 시행한다.<br>2. 제128조제3항·제4항,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,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: 2021년 1월 1일 |

-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체계 정비(법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) 등 개정 사항에 대한 시행일을 2021.1.1.로 규정(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)함에 따라, 본 개정조례안(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8장제7절의 제목, 제25조, 제31조)에 대한 시행일도 부칙으로 근거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「지방세법」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(제146조 제1항부터 제3항)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%의 범위에서 가감(같은 조 제5항)할 수 있도록 규정(원자력발전, 화력발전 제외) 하고 있으나,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표준세율을 유지하고 법 인용 조항만 개정하고 있는바, 향후 목적세로서의 재원 마련 취지에 부응하는 적정 세율에 대하여 재무국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한 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또한, 지역자원시설세는 「지방세법」상 목적세인바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 쓰여야 하나, 현행 특정부동산분(개정안 “소방분”) 세입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도, 특정자원분(개정안 “특정자원분”, “특정시설분”)은 그대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되어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바, 본 세목의 세입 운영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

## 〈최근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실적〉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<b>특정부동산분</b><br>(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) | 2,510 | 2,591 | 2,694 | 2,887 | 2,891 |
| <b>특정자원분</b><br>(일반회계)         | 3.32  | 3.58  | 4.68  | 4.26  | 2.04  |

###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7조(지방세의 세목)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.

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득세   2. 등록면허세   3. 레저세   4. 담배소비세   5. 지방소비세   6. 주민세
7. 지방소득세   8. 재산세   9. 자동차세

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자원시설세   2. 지방교육세

###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...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### 「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」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액
2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
3.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, 과징금, 이행강제금
4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5. 국고보조금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7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세법」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 및 제31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2. 27.~3. 18.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, “제1항제4호”를 “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법 제146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146조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법 제146조제1항제6호”를 “법 제146조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제8장제7절의 제목 “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”를 “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, “특정부동산에 대한”을 “소방분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 중 “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, 특정부동산에 대한”을 “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8장제7절의 제목, 제25조,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제15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                | <p>제15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17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                 | <p>제17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19조(세율) ①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9조(세율) ①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   |
| <p>제21조(세율) ①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<u>제1항제4호</u>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       | <p>제21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제2항제1호</u>-----<br/>-----.</p> |
| <p>제23조(신고 및 납부) <u>법 제147조 제1항제2호</u>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<u>법 제146조제1항제5호</u>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</p>          | <p>제23조(신고 및 납부)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법 제146조제2항제2호</u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   | <p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|
| <p>제24조(신고 및 납부) 법 제14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<u>법 제146조제1항제6호</u>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4조(신고 및 납부) -----<br/>-----<br/>-- <u>법 제146조제2항제3호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| <p>제7절 <u>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</u></p>  | <p>제7절 <u>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</u></p>  |
| <p>제25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<u>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 | <p>제25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<br/>--- <u>소방분</u> -----<br/>----- <u>제3항</u>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<u>법 제147조제3항</u>에 따른 <u>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</u></p>                    | <p>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<u>법 제147조제6항</u>에 따라 <u>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</u>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         | 개정안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
| 시 전 지역으로 한다. | -----. |



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(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

## 4. 작성자 :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(2133-3357)